

# 日本에 있어서의 放射線障害와 勞働災害(上)



平澤悠紀\*

## 1. 勞災와 업무災害

勞災, 즉 「勞働災害」는 노동안정 위생법(이하 「安衛法」)의 용어이다. 安衛法에는 「노동자의 취업에 관한 건설물, 설비, 原材料, 가스, 증기, 粉塵 등에 의해, 또는 작업행동 기타업무로 말미암아 노동자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하는 것」이라 되어 있다(安衛法 2조).

노동기준법(이하 「기준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하 「노재보험법」)에는 「업무재해」로 되어 있다. 업무재해의 定義는 기준법에는 「노동자의 업무상의 부상 내지 걸린 질병」(법75조)로 되어 있고, 노재보험법에는 「노동자의 업무상의 부상, 질병, 장애 내지 사망」(법7조)로 되어 있지만 같은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업무재해」는 그 이외의 「업무의 재해」와 구별하기 위해 「업무상 재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2. 업무상 재해의 내용

(1) 업무상 재해 중 부상에 대해서는 노동성의 통달(이하 「基發」)에는 「업무에 기인하여 생긴 부상」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① 취업중의 재해
- ② 취업시간 외의 재해
- ③ 사업장 시설 외에 있어서의 재해

### ④ 그 밖의 재해

(2) 업무상 재해 중의 질병에 관해서는 「업무에 기인되는 질병」으로 勞基法 시행규칙 35조, 별표 1의 2에 세밀히 定義되어 있다.

- 1) 업무상의 부상으로 기인된 질병
  - 2) 물리적 因子에 의한 질병
- 다음에 열거하는 질병

⑤ 電離 방사선에 노출된 업무에 의한 급성 방사선증, 피부潰傷 등의 방사선 피부장애, 백내장 등의 방사선 眼病患, 방사선 폐염, 再生不良性 빈혈 등의 造血器 장애, 骨壞死, 그밖의 방사선 장애

3) 신체에 과도하게 입는 작업양태에 기인하는 질병

- 4)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 5) 업무에 의한 塵肺病

6) 세균, 바이러스 등의 病原体에 의한 질병  
7) 암原性 물질, 또는 암原性因子 내지 암原性工程에 있어서의 업무에 의한 다음에 제시한 질병

① 석유벤진……

⑩ 電離방사선-백혈병, 폐암, 피부암, 骨肉腫, 갑상선암……

## 3. 勞災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의 요건

노재보험법에 의한 보상금부에는 「업무수행성」과 「업무起因性」의 두 조건의 성립이

\* Yuuki Hirasawa : 일본 원자력발전주식회사 노무부 차장

필요하다.

1) 업무수행성이란 「노동계약에 바탕을 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가 인정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 ① 취업중
- ② 작업의 준비, 뒷처리 또는 대기중
- ③ 사업장 내에서의 휴게중
- ④ 출장중
- ⑤ 통근중의 사업소 전용버스 등의 이용중

2) 업무起因性이란 「노동계약에 바탕을 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① 업무와 傷病을 야기한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업무와 질병을 일으킨 유해작용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사고 내지 유해작용과 傷病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

#### 4. 사용자에 의한 보상

의사의 진단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내지 사망이 업무상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사용자(회사)는 필요한 요양을 실시하게 하고, 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외에 휴업 때문에 얻지 못한 임금의 보상, 부상 내지 질병이 치유한 뒤의 후유증에 대한 보상,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보상과 장례비의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勞基法, 제75, 76, 79조). 이 경우 신청자는 노동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그 유족이 된다. 업무상이나 아니냐를 판단하는 자는 勞基法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가 자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노사간에 협의하는 장소에서 판정하는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것이 되도록 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勞基法이 노동조건인 最低限을 정한 이상, 보상의 내용은 노동조건인 일부이며, 노사간에 경정하여 전원에게 내용을 잘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2) 노재보험법의 보상給付에 의한 免責

사용자는 가입하고 있는 「노재보험법에 의해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給付가 실시되어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보상의 책임이 면제된다」(勞基法, 제84조).

많은 회사들은 노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재보험에서 보상給付가 지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회사가 직접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보상을 하여 노재보험에서 보상給付를 받지 않더라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회사가 보험료와 직접보상비의 이중부담을 하는 경우가 여러가지 이유에서 드물게 있다.

또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금액에 보상액이 미치지 못할 경우, 100% 가까이 되도록 上積보상 내지 부가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 5. 노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

##### 1) 노재보험에서의 보상급부

노재보험에서의 보상급부란 정확히 말해 노동자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급부 등을 말하며, 사용자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 보상하는 勞基法과는 다르다. 이 제도는 회사가 제도에 가입하여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된다. 노동자 내지 유족으로부터 보상급부에 청구가 있는 것에 대해, 노동기준 감독서장이 판단하여 인정된 것에 대해 보상급부를 한다. 회사의 역할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청구자가 勞基署長에게 제출하는 청구서에 사업자 증명을 해 주는 정도이다.(회사가 「업무상 재해가 없기 때문에……」라는 구실로 증명을 거부하는 경우, 증거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勞基法으로 사업자가 판단하는 것과 달리 행정청의 판단만으로 보상급부가 실시된다. 회사의 불법행위나 안전배려 의무위반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에서 「무과실 책임」의 손해배상이라 불리워진다. 이 노재보험으로 이루어지는 보상급부는 「노동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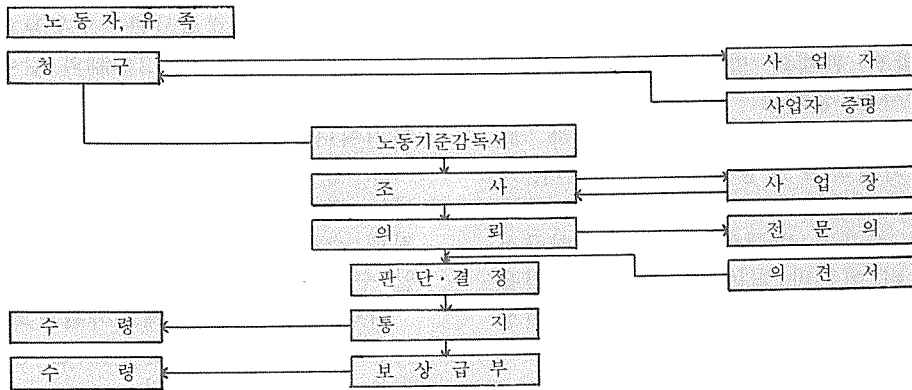


Fig.1 노재보험, 보상급부 사무절차

障害, 또는 사망) (勞災보험법, 제2조의 2)으로 되어 있다. 이 보상의 범위는 勞基法과 거의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상이하다. 또한 「통근재해」는 「노동재해」는 아니지만 「노동자의 업무재해」이기 때문에 노재보험에서 급부가 이루어진다. (노재보험법, 제2조의 2).

이상의 노재보험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Fig 1. 참조)

- ① 부상, 질병의 진단: 의사에 의한(의학적 행위)
  - ② 노재의 立證: 청구자
  - ③ 인정: 행정청에 의한 (행정행위)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야 비로소 보상급부가 이루어진다.
- 2) 보상의 내용(勞基法와의 대비)

勞基法	노 재 보 험 법	
요양보상	요양보상급부	
휴업보상	휴업보상급부	휴업특별지급금
障害보상	障害보상급부	
		障害특별지급금
	障害보상연금	障害특별연금
	障害보상일시금	障害특별일시금
유족보상	유족보상급부	유족특별지급금
	유족보상연금	유족특별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일시금
	장례비	장례비
	傷病보상연금	傷病특별지급금
		傷病특별연금
	중단보상	

## 6. 업무상 재해에 불법행위, 안전배려 의무 위반(債務不履行)이 있을 경우의 보상

### 1) 형사처벌 등

① 安衛法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민법상의 債務不履行으로 손해배상의 청구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② 안전배려 의무위반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지만, 민법상의 債務不履行으로 손해배상의 청구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 2) 민사상의 배상책임

① 「불법행위, 債務不履行이 있을 경우,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한다」(민법 415조)는 책임이 발생하여 구체적인 대응을 하도록 요구되는 일이 생기지만, 사망과 같은 손해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으므로 금전에 의한 배상이 된다.

② 손해배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일으킨 원인이 되는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며, 概括적으로 확대되는 일은 없다.

③ 상기 ②의 인과관계 입증은 청구하는 자가 해야 한다. 청구된 것 중 인과관계의 입증이 불가능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④ 청구하는 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금액이 相殺되어 減額된다.

### 3) 민법 이외에서의 손해배상

원자력발전 관계의 방사선장해에 관하여 말하면 방사선 장해를 「원자력손해」라 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이하 「原賠法」)에 의거하여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敦賀발전소에서의 작업에 의해 무릎에 방사선 장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청구소송을 일으킨 이른바 岩佐訴訟이 한 건 있을 뿐이다. 이것은 最高裁까지 올라가 방사선장해가 아니라 하여 청구는 기각되었다.

## 7. 사용자에 의한 보상, 노재보험에 의한 보상급부와 민법 등에 의한 배상

사용자에 의한 보상 또는 노재보험에 의한 보상급부가 실시된 경우, 사용자는 즉시 민법이나 原賠法에 의한 배상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사용자측에 불법행위나 안전배려 의무위반(債務不履行)이 있어, 청구자에 의해 인과관계가 입증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업무상 재해의 보상이나 보상급부는 사용자가 無過失일 때라도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자를 구제하는 입장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보상이 이루어졌으니 불법행위나 債務不履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 8. 노재보험의 인정에 不服이 있을 경우

노재보험의 보상급부 신청자는 勞基署長에 의한 업무외의 결정이나 보상급부의 내용에 不服이 있을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

① 勞基署長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기준국,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심사관(이하 「노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 심사청구에 대해 노재 심사관은 경과 등을 조사하여 결정을 내린다.

② 노재 심사관의 결정에 不服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보험 심사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勞基署長-노재심사관-노동보험 심사회로 마치 재판에 있어 3審制와 같이 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행정판단에 대한 不服의 제기이다.

③ 행정행위의 판단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에 의해 결정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가 있다.

다만 勞基署長-노재심사관-노동보험 심사관과 같은 심사 등을 거치는 동안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 9. 방사선 장해

### (1) 방사선 장해

#### ① 방사선 장해와 방사선 영향

새로운 ICRP의 1990년 권고에는 방사선 영향 중 임상적으로 관찰된 유해한 영향인 「害」(harm)에 해당된다.

#### ② 구분

방사선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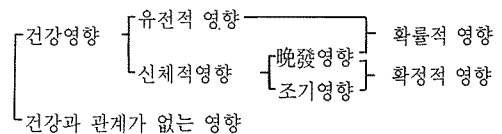


Fig.1 노재보험, 보상급부 사무절차

#### ③ 잠복기간에 의한 분류

방사선을 입고나서 영향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적 길이를 잠복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조기영향: 잠복기간이 수주일 이내, 방사선 장해로서는 급성장해

나) 후기영향: 잠복기간이 수개월 이상, 방사선 장해로서는 晩發性장해

방사선 영향이나 방사선 장해에 관해서는 많은 전문서적이 있다.

#### (2) 방사선 장해의 특징

방사선 장해에는 여러가지 특징이 있지만, 관계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非特異性

방사선을 입은 것에 의해서만 증세가 나타나는 질병에는 「방사선에 대한 特異성이 있다」고 하지만, 방사선 장해에는 방사선에 의해서만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없다. 방사선 이외의 원인으로 방사선 장해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질병이 방사선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特定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② 多樣性

똑 같은 방사선을 입어서도 장해가 나타나는 방식에는 개인에 따라 여러가지 다르며 千편百률적이라 할 수 없다. 개인에 따라 아주 다르다.

### ③ 潛行性

많은 선량이 아닌 방사선을 입은 경우, 현장에서 즉시 증세가 나타나는 일은 없고, 상당한 기간 아무일도 없이 경과한 후 發症하는 경우가 있다. 發症할 때까지의 잠복기간은 때로는 10수년이나 되는 경우도 있다.

## 10. 업무재해로서의 방사선 장해

「발전소에서 근무한 사람에게 방사선 장해의 증세가 나타났다」고 하여 아주 간단히 말하는 경우가 있다. 누구에게도 이해가 되고, 일견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측은 곧 「입은 선량과 發症과의 인과관계는……」, 「勞災認定으로는……」 등과 같이 對應하지만,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다. 「업무재해」의 대응원칙을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 ① 질병의 확정진단

최초에 해야 할 일은 發症한 증세가 어떤 질병인가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진단은 의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진단을 내리도록 하는 일이다. 때에 따라 확정진단을 받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疑」같은 것이 첨부된 진단서를 서둘러 받아서는 안 되며, 확정진단을 기다려 그것을 받아야 한다. 대응을 서두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럴 필

요는 전혀 없다.

의사에게 發症한 증세가 방사선 장해인가 아닌가의 판단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무리한 일이다. 방사선 장해의 특이성을 잘 아는 의사이면, 인과관계를 特定할 수 없는 이상 그 판단을 거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재해의 보상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의사라면,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문의하는 쪽이라고 오히려 반문할 것이다.

### ② 질병의 방사선 장해로서의 확정과 업무재해의 판단

의사의 확정진단이 나오면, 그것이 업무상으로 입은 방사선에 의해 發症한 질병인가 아닌가를 확정지어야 한다. 그것은 업무재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된다.

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대응하는 사적인 傷病的 경우와 회사가 전적으로 관계할 필요가 있는 업무재해와는, 복무상의 여러가지를 포함한 사원의 모든 대우가 서로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회사로서는 명확하게 업무재해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둘 필요가 있다. 질병에 관계되는 수속 등을 업무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를 즉시 판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많이 있다.

본인 또는 유족이 업무장해라 생각하여 즉시 노동기준 감독서장에게 노해보험에 의한 보상급부의 청구를 했을 경우에도, 업무재해인가 아닌가는 회사가 판단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업무재해인가 아닌가는 질병과 원인에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방사선 장해의 경우에는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까다로운 일이 많이 있다. 그래서 당분간 업무재해라고 가정하여 대응함으로써 결론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지만, 뒤에 가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업무재해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의사의 진단결과에 의거하여, 작업의 상태, 작업장, 작업환경의 상황 등을 과거로 되돌아가서 조

사하여 전문가나 노동조합의 견해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노동조합과 협의회 등의 장소에서 협의하는 회사도 있다.

회사는 업무상이나 업무 외의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간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결론과 근거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견해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재보험에 의한 보상금부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청구하는데 있어 회사는 사업자증명을 해 줄 용의가 있다는 것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빈틈없이 해두지 않으면 “노재은폐”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

### ③ 업무재해의 보상방침 결정

업무재해라 결정이 되면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노동기준법(「勞基法」)에 의거 보상하게 되지만, 통상 법정보상을 최저로 하여 보다 레벨이 높은 보상을 노동협약이나 就業規則에다 정해 놓는 회사가 많고, 勞協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기계적인 계산에 의해 보상액이 지급된다. 노재보험에서 보상금부가 행해질 경우에는 上積보상 내지 附加보상을 하는 것이 된다.

### ④ 노재보험법에 의한 보상금부의 청구

본인 또는 유족은 傷病이 업무재해라고 생각되었을 때, 어떠한 제한도 받지않고 노동기준 감독서장에게 노재보험에 의한 보상금부를 청구할 수가 있다. 보상금부에는 이 청구가 없으면 안된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회사가 절차를 밟는 것도 아니다. 이 청구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 청구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청구시에 회사에 대해 사업자증명을 청구하는데 있어, 때로는 업무재해가 아니므로 증명할 수 없다는 불가사의한 행위를 아직도 볼 수 있다. 사업자증명을 거부하면 노재에 의한 보상금부가 이루어질 수 없고, 회사의 결정이 증명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자증명이 없더라도 보상금부의 청구는 유효하며, 회사는 나중에 勞基署의 현장조사나 사정청취를 받게 된다. 회사는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노재보험법을 받을 것 같이 않는 경우일지라도, 보상

금부 청구를 방해하는 행동이나 협력적이지 않은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 ⑤ 회사에의 배상요구

본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노동재해에 관해 회사에게 배상요구가 있거나 배상청구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노재보험에서 보상금부가 되었으므로, 회사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는 근거에서 요구 내지 提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에 회사는 어려운 대응을 해야 할 경우가 많다.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이해방법을 말한다. 노재보험에 의한 보상금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에 배상책임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사원이 업무재해를 입은 것으로 여러가지 債務가 회사측에 발생하지만, 이것을 배상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여 유족하여 사과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勞基法の 규정이나 勞協 및 취업규칙에 따른 일련의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배상은 업무재해로서 회사에 불법 내지 위법이 있는 경우, 또는 안전배려 의무위반으로 債務不履行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사과과 필요하게 된다. 또한 노동자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금액의 相殺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 11. 노재보험법에 의한 보상금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성이 관장하는 업무재해의 보상금부를 하기 위한 제도에 거의 모든 회사는 가입하도록 의무지워져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업무재해에 대한 보상을 노재보험에서 보상금부를 받기 위한 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회사가 직접 보상하는 케이스는 드물다.

### (1) 방사선 장해의 업무재해로서의 인정

#### ① 인정기준

방사선 장해에 관해 업무재해로써 보상금부의 청구가 있었을 때,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는 勞基署長이 판단한다. 그 판단

기준은 공개되어 있다. '86년 11월 8일, 基發 제810호 「電離방사선에 관한 질병의 업무상 외의 인정기준에 대해」(이하 「인정기준」)이 그것이다. 이 인정기준에 합치되어 있으면 확실히 인정되고 보상급부를 받을 수 있으며, 합치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공명정대하게 되어 있다.

② 인정기준의 내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제1 電離방사선 장애의 유형에 대하여  
제2 電離방사선에 관한 질병의 인정에 대하여  
(해설)

A) 電離방사선 장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급성 방사선 장애
  - (1) 급성 방사선증 (급성 방사선에 의한 사망을 포함)
  - (2) 급성 방사선 피부장애
  - (3) 그 밖의 급성 방사선 피부장애
2. 만성적 피폭에 의한 電離 방사선 장애
  - (1) 만성 방사선 피부장애
  - (2) 방사선 조혈기 장애(백혈병 및 再生不良性 빈혈은 제외)
3. 電離 방사선에 의한 惡性 新生物
  - (2) 외부피폭에 의한 原發生의 惡性 新生物
    - 가) 피부암
    - 나) 甲狀腺암
    - 다) 뼈의 惡性 新生物
  - (3) 내부피폭에 의해 발생한 특정 臟器의 惡性 新生物
    - 가) 폐암
    - 나) 뼈의 惡性 新生物
    - 다) 간 및 胆道系의 惡性 新生物
    - 라) 甲狀腺암
4. 電離 방사선에 의한 退行性 질환 등
  - (1) 白肉障
  - (2) 再生 불량성 빈혈

- (3) 骨壞疽, 骨粗鬆症
- (4) 그 밖의 신체 局所에 발생한 纖維症 등

제2의 인정에 관한 해설을 지면상 모두 해설할 수 없다.

B) 「白血病」에 관해 살펴본다.

제2의 「電離 방사선에 관한 질병의 인정에 대하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어 있다.

5. 白血病

다음에 제시한 요건의 어느것에 해당해야 할 것.

- (1) 상당량의 電離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있을 것.
- (2) 피폭개시 후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질병이어야 할 것.
- (3) 骨髓性 백혈병 내지 임파성 백혈병이어야 할 것

인정기준 중에 모든 백혈병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최근의 의학회에서 백혈병의 분류는 한 것을 아래 표에 적어본다.

- A. 골수성 백혈병
- B. 골수 單球 백혈병
- C. 單球 백혈병
- D. 임파성 백혈병
- E. 形質細胞 백혈병
- F. 腫瘤形成性 백혈병
- G. 백혈병 이외의 골수세포의 腫瘍性 增殖
- H. 幹細胞 백혈병 내지 분류불능 백혈병
- I. 前白血病
- J. 혼합형 백혈병

인정기준에 포함된 것은 이 중 A와 D 뿐이다. 그 밖의 백혈병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90년도의 백혈병에 의한

사망수는 '90년도의 모든 사망자수 82만명 중 5천 6백명 (0.7%)이다. 5천 6백명의 내역을 보면, 골수성 백혈병 2천 8백명(50%), 임파성 백혈병 1천 5백명(26%)이 되어 있어, 골수성 백혈병과 임파성 백혈병이 전체의 4 분지 3을 차지하고 있다.

C) 해설의 주요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5. 백혈병

- (1) ……「상당량」이란, 업무에 의해 피폭된 선량의 集積선량이 다음 式으로 산정되는 값 이상의 선량……  
0.5렘×(…업무에 종사한 연수)
- (2) 백혈병을 일으킨 誘因으로서는 電離 방사선 피폭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또한 백혈병의 발생이 電離방사선 피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症例에 있어서도, 업무에 의한 電離방사선 피폭선량에 医療上的 電離방사선 피폭선량 등의 업무 이외의 피폭선량이 첨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上記 (1)의 式에서 나타난 값에 비교적 가까운 것에서 이것을 밀돌 때는…… 건강진단을 실시했기 때문에 피폭된…… 선량은 ……업무상의 피폭선량으로 다루어진다.

③ 인정의 작업

勞基署長은 청구에 의거 전문의 의사에게 의견서의 제출을 의뢰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조사를 하며 판단재료를 수집하여, 결정을 내린다. 노동성에 의하면, 백혈병의 보상급부 신청에 있어 모두 예외없이 本省에 제출하여 本省의 전문가 회의의 결론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조사에 관해서는, 인정기준의 別添에 「電離방사선에 관계되는 질병의 업무 起因性 판단을 위한 조사실시 요령」이 있으며, 別紙에 「電離방사선과 관계되는 질병의 實地調査表」가 있어, 그 1에 「원자력 발전소의 업무에 관한 조사표」, 그 2에 「핵연료 물질의 제조 및 가공의 업무……표」, 그 3에 「비파괴 검사업무……표」, 그 4에 「의료기관의 방사선 업무……표」가 있다.

회사는 보상급부 청구에 대해 사업자 증명을 했을 때는, 즉시 이 조사표를 채울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좋다. 조만간 勞基署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 내지 유족을 위해 빨리 결정이 내려지도록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것이 요망된다.

